

배외주의로 인한 갈등에 대처하는 동유럽의 실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Eastern European Practice: Managements of the Chauvinism-based conflicts

황 명 준**

Hwang, Myoung-Jun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 방식 - 비교 사례적 접근

III. 중오 발언에 관한 규제 사례 - 동유럽을 중심으로

IV. 시사점

V. 결 론

┃ 투고일자: 2024년 02월 14일 ┃ 심사일자: 2024년 02월 21일 ┃ 게재확정: 2024년 02월 24일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12067)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탈냉전이 산물인 유럽연합(EU)이 확장됨에 따라 구 소련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권역으로 편입되었던 옛 동구권 지역에 주목한다.

옛 동구권을 중심으로 대두되어 온 배외주의와 이를 표상하는 징후로서의 증오 발언, 증오범죄는 EU 확장에 따른 역내 시민들의 교류, 이동이라는 종래의 긍정적 청사진의 이면에 관용이라는 가치의 공간이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단, 위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난 10여 년을 기준으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인접한 중서부 유럽 국가에서도 국수주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확대되어왔다. 이들 세력 중에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추축국 진영의 인종주의적 시각에 단절에 소극적인 수정주의 그룹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는바, 전후의 평화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성에 기인하는 범질서에 대한 도전의 가장 첫 단계가 증오 발언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범죄라 할 것이다.

물론, 배외주의적 증오 발언 및 관련 범죄를 단순한 발화 또는 불법행위로 환원하여 통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가중된 규모의 갈등,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징후로서의 증오의 위험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경제 사정에 더하여 역사적 우월의식, 영토의식 간의 상호 중첩의 위험성은 유럽연합 체제 내 동유럽에서 불식되지 않았으나, 이들의 선례는 역설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끼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기시감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증오 발언, 증오범죄의 배경인 배외주의는 예외적,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일상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위험 요소로 볼 수도 있는바, 이 부분에 동유럽의 관련 실행 정리의 실익이 존재한다.

주제어

배외주의, 증오 발언, 증오범죄, 동유럽, 국제인권법, EU 체제

I. 서론

2023년 후반기 현재 범지구적인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만 3년이 넘도록 이어졌으면서도 아직 완전히 진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 종식된 이후(post-coronavirus)의 국제 정세가 이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방식이나 차원으로 변화하게 될지 여부일 것이다. 특히, 유례없는 전염병(pandemic)의 전 지구적 창궐로 인하여 이전까지는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거나 용인되었던 상호 관용 및 교류 증대도 상당 기간 사실상의 단절 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경 및 주권 국가의 존재감이 재발견되는 국제 질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이후 인적, 물적 교류의 회복이나 타자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재구축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현재까지의 국제 사회의 면모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궁극의 이상적 목표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전후 세계 질서에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으로 대표되는 국제법 규범에 대한 공감이 자리잡음과 동시에 조약의 법전화 및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에 대한 전 세계적 차원의 consensus가 확대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정리된다.¹⁾ 그리고 이는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이 흐름이 UN이 천명하는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 간의 우호 관계의 발전 및 협력의 달성을 촉진”²⁾에 수렴하게 되리라는 낙관론의 주요 토대로서 작용하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그 이전 시기까지의 국제법적 전제나 상호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일시 중지할 만한 근본적 사정변경(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³⁾이 주장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의 국제 교류 및 그 과정에서의 인권 친화적인 규범 시스템의 회복에 대한 전망은 낙관할 수만은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전문(前文)

2) Ibid.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2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본 협약에서의 *Clausula rebus sic stantibus*는 부가 조건의 충족이라는 전제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조약에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으나, 이는 로마법 등 고전적 서구질서로부터 비롯된 규범이기도 하는바, 사정변경 허용 여부 및 그 외연의 문제는 오랜 기간 국내외 각종 법질서의 구축을 위한 주요 화두였음을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정인섭, 조약법 - 이론과 실행, 박영사, 2023, p. 343 참조.

없으리라 생각된다.⁴⁾

이렇듯 20세기 중반의 전후 시기부터 이번 세기까지 UN을 필두로 한 국제 규범의 확립과 공사 불문하고 초 국경적 교류가 보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이 작용하는 무대인 국제 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이라는 예외적 사태 앞에서 근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비하여 각국에서 시행되어 온 인적, 물적 이동의 봉쇄조치는 자연스레 바이러스 유입의 요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외부인, 타자에 대한 경계심, 적대 의식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점이 배외주의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⁵⁾ 그리고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수년간의 국경 봉쇄가 그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일정한 사회집단의 주관적, 집단적 공포와 무지에 입각한 표현 및 행동이 구체화한다면 외국인 혐오(xenophobia) 확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귀결은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낙인과 인종주의로의 후퇴일 수밖에 없다는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⁶⁾ 타자에 대응하는 경계확정을 지향하는 사회병리적 인식이 국내의 각 부문, 나아가 세계 각지에 뿌리내리게 된다면, 이는 지구촌 여러 권역에서 국제적 규범의 정착 및 보편성의 확대, 그리고 상호 교류와 친화적일 수 없는 자기

4) 예를 들어 Pew Research Center 2019년 9월 23일 자 인터넷 기고 - Moira Fagan and Christine Huang, "United Nations gets mostly positive marks from people around the world" 참조. 특히, 전후 국제법 질서를 선도하는 UN의 긍정적 이미지는 대체로 젊은 세대로 향할수록 확산 추세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관용적 추세의 방향성이 일정 부분 틀어지도록 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는 부정적이다.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9/09/23/united-nations-gets-mostly-positive-marks-from-people-around-the-world/> (last visited on Jan. 21, 2023)

5) Edmond Ng, "[Editorial] - The Pandemic of Hate is Giving COVID-19 a Helping Hand," *Am. J. Trop. Med. Hyg.*, 102(6), 2020, pp. 1158-1159, pp. 1158-1159 참조. 이 부분에서 Ng가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 driven xenophobia'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에서 파악되듯이, 지난 전염병이 이주민 등의 타자에 대한 증오 확산의 하나의 구실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각지에서 아시아계 특히, 반중 감정이 확산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증오의 선동을 경계하고 있다.

6) Ibid. 코로나바이러스와의 관련성을 논외로 한다면, 일본 한정으로 소위 '외부적 위협인지 가설'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하고 있다. 이는 구 식민지 출신을 포함하여 외국 국적 거주자 비율이 2%에 불과한바, 양적(또는 유형적) 견지에서 일견 외부적 집단에 대한 '위험인지'가 현실화하기는 어렵다고 간과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전제된 타자(이방인)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관련된 불안감을 증폭하면서 배외주의를 촉진하는 측면도 존재할 수 있는 점에서 동국의 외부적 위협인지는 역으로 외국인 혐오로부터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을 수 있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金明秀 「日本における排外主義の規定要因 - 社會意識論のフレームを用いて -」 『フォーラム現代社 會學』 14 (2015), p. 39를 참조.

중심적 배외주의(jingoism; chauvinism)로 확대, 재생산되는 온상이 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⁷⁾

다만, 보편적 관용 범주에서 이탈한 배외주의의 경향 자체가 곧바로 국내외적으로 실효적 조치 발동을 보장할 만한 충분조건이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의 일부 권역이나 국가에서 터져 나온 배외주의가 국지적 균중 시위 형태로 간헐적으로 표출되는 수준이거나, 또는 미미한 수준에서나마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한다면, 그 단계에서도 즉시 공권력이 실효적 사전 대응이나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필연성, 당위성이 도출되는 것인가?⁸⁾ 적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는 한, 공권력의 주시 단계이거나 여전히 제량 범위라는 판단도 가능하며, 대처 방식이 오로지 형사법적이거나 규제적 방식이어야 할 필연성은 없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구체적 배외주의 활동에 대한 실효적 대처, 규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인물이나 단체의 반사회적 경향성이 단순히 내심에 머무르거나 고립적, 간헐적으로 드러나는 한, 실효성 있는 대처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⁹⁾ 설

7) 예를 들어 조선일보 2020년 7월 14일 자 인터넷 기사, “코로나 배타주의 - 간토 조선인 학살 연상시켜’ -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 사회 번지는 배타주의 우려”; 서울신문 2020년 7월 13일 자 인터넷 기사 - 김태균 특파원, “하루키, 간토 조선인 학살 거론... 日 ‘코로나 배타주의’ 경고” 등을 아래 링크로 각각 참조.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0014.html

(last visited on Nov. 30th, 202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13026026>

(last visited on Nov. 30th, 2022)

8) 배외주의운동 발생 시의 공권력의 개입 방식과 정도는 분포가 다양할 수 있다. 첫째 단계로서 최선의 이상적 해법으로서의 배외주의자 측의 반성 및 행동 중지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바, 둘째 단계로서 이들의 발언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 다만, 규제의 당위성은 일견 자명한 것으로 여겨짐에도 현실적 적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요소가 고려되고 변수도 작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井竿富雄 「現代日本の排外主義運動」 『山口縣立大學學術情報』 第8号(2015年 3月). pp. 1-10, p. 3 참조.

9) 개인이나 및 일부의 국지적 발언이라고 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특히, 문제 발언의 출처가 국가 수뇌부와 그에 버금가는 주요 공적 인사, 또는 유력한 단체라면 발언이 사적 모임에서의 1회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 심각성 및 그로부터 파생된 선동 결과 등 법적 질서에 반하는 불법성의 정도에서 차원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이번 연구의 주된 논의 대상 발언이나 지역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보수당 및 기타 보수주의 계열 분파 정당에서 장기간 하원의원을 지내고 보건부 장관도 역임한 중진 정치인 Enoch Powell의 소위 ‘Rivers of Blood’ 연설은 인종차별로 해석되는 국가 주요 인사의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분열 및 불신을 장기간 드리우게 되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Enoch

사, 배외주의에 입각한 차별적 언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정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분위기, 경향만으로 공권력 발동함은 대중 요법에 지나지 아니하며 임시적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¹⁰⁾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발화나 행동과 같이 배외주의적 실행이 유형적인 착수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대처나 규제 방식에 관한 선례 축적 등이 가능한바, 전반적 문제를 관찰하려면 이러한 실효적 규범에 더하여 특정 사회 전반의 배외주의 경향성을 중장기적으로 추적하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어도 이념적, 프로그램적 차원에서나마 배외주의에 대응하는 입법화가 이루어졌는지도 검토가 있어야 한다.¹¹⁾

Powell은 1968년 영국 Birmingham의 한 보수단체 회합에서 전후 영국 본토로의 대량 이민이 독립한 구 영연방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었던 당시를 비판하였는데, 특히,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Virgil)가 작품 Aeneid에서 당시 로마의 내전을 ‘the River Tiber foaming with much blood’로 표현하였던 부분을 인용하였다. 그가 비유하기를 영국 내의 종족 갈등으로 인한 ‘피바다’가 야기될 것이라는 등 노골적인 배외주의적 선동을 하면서 커다란 파문이 초래되었다. Powell은 이후 상당 기간 의원직을 유지하였음에도 위의 발언 이후 영국 정계 중심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의 극단적인 배외주의 발언은 반세기가 경과한 시점에도 이민, 다문화 그리고 EU 등의 사안에 회의적인 영국 사회 일각의 분파에서 호응을 얻고 있음은 우려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Judi Atkins, “‘Rivers of Blood’ fifty years on: Enoch Powell’s rhetoric of blame and exclusion,” *British Politics and Policy at LSE*, 2018년 4월 13일 자 학내 블로그 참조.

<https://blogs.lse.ac.uk/politicsandpolicy/rivers-of-blood-fifty-years-on/> (last visited on Nov. 15th, 2023)

또, 인종주의적 발언에 정확히 대응되지는 않을지언정, 2022년 출범한 Rishi Sunak 총리의 보수당 내각 구성원 중 진보적 의제를 지지하는 야당 정책이나 북아일랜드의 반영, 반체제 인사들에 대하여 공격적 언사를 지속하다가 2023년 11월 경질된 Suella Braverman 전 내무장관을 빗대어 주먹구구식 Powell의 재림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소환되는 실정인데, 정작 현직 수상은 물론, 문제 발언을 한 전 내무장관이 모두 범 인도계 이민의 후에임은 영국 사회가 드러내는 아이러니이다. 이와 관련하여 The Guardian 2023년 11월 9일 자 인터넷 기사 - Daniel Boffey, “Braverman clarifies Northern Ireland comments amid angry criticism,”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3/nov/09/braverman-clarifies-northern-ireland-comments-amid-angry-criticism> (last visited on Feb. 26th, 2024)

10) 毎日新聞 2021년 7월 28일 자 인터넷 기사 - 金志尙, “ヘイトは消えたか - 「排外主義」の廣がり 自民党の責任も 解消法施行後もヘイト続く” 참조. 참고로 이 기사에서 인터뷰에 응한 와세다대학교 樋口直人 교수는 벌칙 등이 수반되지 않은 이념적(프로그램적) 법률이라도 최소한 증오 발언이 사회적으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표출된 증오 발언은 비유하건대 해수면 위에 표출된 빙산의 일각이며, 해저에 도사린 배외주의의 흐름에 대하여 간과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https://mainichi.jp/articles/20210727/k00/00m/040/268000c> (last visited on Feb. 1st, 2023)

11) Ibid. 참고로 2016년 일본에서는 차별 규정이 없는 이념적 규범이지만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처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

이렇듯 실행의 착수 이후의 단계에 상응하여 배외주의를 구체화한 행동의 위법성 및 해악에 상응하는 임계점이 고려, 설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목할 대상으로서 국제법을 위시한 초국경적인 규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개념으로서 첫째, 언어적 행위로의 표출 단계인 증오 발언(hate speech)¹²⁾과 둘째, 이를 구체화한 단계로 나아간 행위, 그리고 원래의 발언에 내포된 해악의 실현을 향하여 조력한 결과물인 증오범죄(hate crime)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¹³⁾ 일견, 전자인 증오 발언을 매개로 표출된 외부적 의사 표출에 일정한 규범적 함의가 내포되었다고 평가되면, 개별 국가가 시행 중인 형법에 의거 처리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인식도 존재할 수 있다. 일례로 대한민국에는 대표적으로 형법에 명예훼손죄(제307조) 등¹⁴⁾과 모욕죄(제308조)¹⁵⁾가 존재하는바, 임의의 증오 발

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八年法律第六十八号)]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일견, 이 법은 기본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상담 체제의 정비, 그리고 교육 및 개발 활동의 장려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각주 10)에서 인터뷰에 응한 樋口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정한 의의는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법률 명칭을 위시하여 제2조(정의)와 제3조(기본 이념) 부분에서 향후 지양되어야 할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방향성이 일본 내 소수자로 분류되는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는바, 그 자체로도 일본 내 이주자들에게 지난날부터 현재까지의 사회 혼란 및 각종 사건의 귀책사유를 적반하장격으로 돌리려 시도하는 역사 수정주의나 무분별한 양비론, 이를 지지하는 발언, 유형력 행사의 여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효과를 의도하였음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일본의 범무성부터 동 법률에 대하여 소위 ‘증오 발언 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으로 간략하게 지칭하고 있음을 특기할 만하다. 이 법률과 관련하여 아래 사이트와 일본 범무성 사이트를 각각 참조.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8AC0100000068> (last visited on Feb. 1st, 2023)

https://www.moj.go.jp/JINKEN/jinken04_00108.html (last visited on Feb. 4th, 2023)

12) 후술하겠으나 ‘증오 발언’ 자체가 상대적으로 새롭게 제기된 개념이기 때문에 국제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된 정의는 여전히 명백하지 않지만, 적어도 1948년 제노사이드 방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및 1965년 인종차별 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으로 대표되는 전후의 성과물에서 이를 국제법적 가치에 반대되는 행위로서 규제를 예정하는바, 이러한 조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능하여 대략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음은 유의미한 성과일 것이다. 광의의 범주(외연)와 관련하여 師岡康子 『ヘイト・スピーチとは何か』 岩波新書 1460(2013), pp. 43-45, 48 참조.

13) Ibid.

14) 예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각 항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사실 적시와 관련된 공연성, 그리고 보호 법익인 외적 명예의 귀속 대상인 ‘사람,’ 구체적으로 피해자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특정성이 최소한 요구된다. 그리고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특히, 제307조 명예훼손 중 제1항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당해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바, 문제를 조래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는 증오를

언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였으며, 위법성 및 책임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문제의 발언 및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여지는 존재한다.

그렇지만 일련의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및 모욕죄 등이 과연 21세기 현시점에 문제시되는 각국의 배외주의적 흐름 및 갈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 보편적 수단인지는 의문스럽다. 이러한 한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내법 체계 내에서 최후의 보루인 형법 및 기타 형사적 규범의 보충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만일, 외부 집단의 배척을 시사하는 증오 발언 및 범죄 발생 시에 형법적 대처에만 의지한다면, 해석 및 판례 등 종래 실행에 비추어 피해자의 보호 법익 침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점까지 사법 시스템의 발동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형법적 함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배외주의적 증오가 표출되어 실제적 문제로 비화할 경우, 국내적으로 차별금지법 및 기타 관련 법제나 관련 행정적 선례가 사전에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면, 제도적 대처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¹⁶⁾

이러한 지점에서 장래 국내에서 차별금지법이나 이를 부분적으로 아우르는 입법이 구체화 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별의 대상, 담론은 다양하겠지만, 특히, 초기의 발화(發話)가 증오를 내포할 경우와 그에 기인하는 과장에 대비한다는 지점에서 논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로 나아가되, 배외주의의 산물인 증오 발언 및 파생 범죄에 대처하는 실행 정리에 당하여 주지할 점, 연구의 범위에 관련하여 별도의 소규모 장을 할애하여 언급해두기로 한다.

내포하는 발언 자체를 저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함의를 내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15) 보호 법익 자체의 추상성과 더불어 형법으로 의율할 만한 대상인가의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최소 증오 발언을 억제하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16) 2023년 1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차별금지법 통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프레시안 2023년 12월 12일 자 인터넷 기고 - 황준서, “‘사회적 합의’ 부족하다는 차별금지법, 정작 ‘합의’ 안 되는 이유는?” 참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21214431379743> (last visited on Feb. 12th, 2024)

II. 연구 방식 - 비교 사례적 접근

본 연구는 첫째, 증오 발언 및 범죄에 관한 동유럽적 실행, 특히, 민족, 종족 갈등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본 논의에서 동유럽의 지리적 범위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히, 구소련의 영향이 강하였으나 공산권 붕괴 이후, 순차적 NATO, EU 등에 가입함으로써 그 영향으로부터 탈피를 시도한 국가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슬라브 계열 ‘비셰그라드 그룹(The Visegrád Group)’¹⁷⁾ 국가들을 중심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논의 범주에 그 이원 지역까지도 예정할 수도 있으나, 우선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이들 지역을 굳이 논의 대상으로 예정한 이유는 근대 이래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민족 분포의 복잡성 및 국경 변천이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제정 러시아나 오스만 제국의 영향이 여전한 19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시까지도 역내 국경 분쟁 및 전후 처리에서의 국경 변천, 국경 내외의 동포 또는 타자로서의 소수 민족의 복잡한 분포와 그에 기인하는 갈등은 증오가 배양되는 토양으로서 정치적,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포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 종족적 함의의 소수자, 타자와 관련된 증오 발언 및 범죄를 중심으로 다룬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증오 발언 및 범죄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반대 논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천부인권, 국제인권법적 담론, 헌법상 기본권에 입각한 표현의 자유 문제는 물론, 세부적으로 어떠한 방식 및 정도로 비교 형량을 할 것인지의 사안은 다루지 아니한다. 이는 증오 발언 및 파생 범죄 자체에 대응하는 동유럽 권역의 실행에 주목한다는 본 연구의 대상 외의 현안이다. 이는 법익이나 기본권 또는 보호 법익 간의 충돌 문제로서 관련 담론의 범주에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여기서는 증오 발언 및 파생 범죄의 독자적 논의 실익에 주목하기로 한다. 이를 명확히 하여야만, 논의의 대상에 관련된 사례에서 일관된 흐름을 추출할 수 있다.

17) 동유럽의 구소련 위성국가에서의 공산당 지배 종식과 체제 전환에 당면하여 1991년 2월 헝가리 Visegrád에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당시는 연방 분리 전), 그리고 헝가리가 기타의 동유럽 국가와는 구분되는 중부 유럽 국가(Central European Countries)로서의 정체성과 전통 및 문화에서의 상호 공통점, 유사성에 대한 인식 아래, 서방 세계를 지향하며 결성한 지역 협력체. 자세한 내용은 그룹 홈페이지를 참조.

<https://www.visegradgroup.eu/about> (last visited on Feb. 13th, 2024)

셋째, 마지막으로 증오 발언 및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처, 입법에는 원칙적으로 주목할 것이나, 오히려 그에 못지않게 국가의 공공 부문이나 고위직에 의한 발언이 현재 작동하고 있는 국내 및 경우에 따라 EU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으며, 당해 시점에 작동하고 있는 법적, 정치적 틀 속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거창한 담론으로 소급할 필요도 없이 타자에 대하여 배외주의와 혐오가 최소한으로 억제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 부문부터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고위직, 공공기관의 모범이 필요한 만큼, 이들에 의한 관련 사안의 미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여파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각국이 입법이나 인권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대처하고 있다는 자료 이상으로 주목할 부분이기도 하며, 그러한 사례의 경우는 될수 있는 한, 최신의 사안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Ⅲ. 증오 발언에 관한 규제 사례 - 동유럽을 중심으로

1. 폴란드

(1) 법제 및 역내 검토

동유럽 내 EU 회원국인 폴란드는 증오 발언 및 범죄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제 및 대처 방식을 두고 있다. 현행 1997년 폴란드 헌법¹⁸⁾ 제13조는 인종이나 민족적 증오(racial or national hatred)¹⁹⁾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하는 정당 기타 단체가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동 헌법이 자연인을 대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족적 귀속에 따른 증오를 조장할 수 있는 정당이나 그러한 단체의 활동 일체에 대하여 헌법 질서에 반하는바, 경계,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증오 자체 및 이에 입각한 행위를 규제하는 헌법 조문은 폴란드가 지난날 겪은 독일, 소련 등 역사 이래로 대립적이던 주변 강

18) 현행 폴란드 헌법 영문본은 다음 폴란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 가능.

<https://www.sejm.gov.pl/prawo/konst/angielski/kon1.htm> (last visited on Feb. 12th, 2024)

19) 폴란드 헌법 원본(폴란드어)에서는 'nienawiść rasową i narodowościową'

국의 존재에 더하여, 당해 국가들이 극단에 위치하였던 이념의 핵심적 수출국이 되면서, 여러 층위의 고난을 면하지 못하였던 폴란드의 아픈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²⁰⁾

따라서, 폴란드 헌법 제13조의 문언은 동국 내 증오 발언 및 이에 입각한 파생 범죄가 현실화될 경우,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대처할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특히, 폴란드 형법²¹⁾ 제256조 제1항은 민족, 종족, 인종 또는 종교적 차이 또는 무종교를 이유로 하는 증오를 선동하거나 파시즘 및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을 조장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법 위반을 저지른 자는 벌금, 자유 제한,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질 수 있다. 그리고 동 형법 제257조는 위에 열거된 사유를 이유로 가장 초기 단계의 위법행위, 특히, 공연한 모욕 및 타인의 불가침의 법익 침해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짐을 명시하고 있다.²²⁾ 그 외에도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동법 제216조 의거 범죄적 성격을 가지는 증오 발언의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한다.²³⁾

하지만, 이러한 입법적 조치의 존재가 곧바로 폴란드 내에서의 증오범죄 및 그에 기인하는 범죄에 대한 억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20) 동 헌법 제13조 전단에서는 프로그램의 본령이 전체주의적 방법론 및 나치즘,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nazism, fascism, and communism) 활동 방식에 입각할 경우, 금지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멀지 않은 과거에 지리적 인접국에서 발호하여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시까지 동국을 전란에 빠뜨린 외세의 이념적 지향이 재차 폴란드 내에서 팽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21) 폴란드 형법 영문본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운영하는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atabase’의 다음 링크 내 첨부파일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s://ihl-databases.icrc.org/en/national-practice/penal-code-1997-amended> (last visited on Feb. 13th, 2024)

22) 다만 이러한 죄들은 Chapter XXXII ‘공공질서에 대한 침해 (Offences of the Public Order)’라는 항목에 속해 있으며, Chapter XVI(제117조-제126조)에서는 특이하게도 평화에 관한 죄, 인도에 관한 죄, 그리고 전쟁범죄 (Offences against peace, and humanity, and war crimes)와 같은 국제형사법 계열 조약을 연상시키는 조문을 자국 헌법에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23) 예를 들어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 Final report on Poland adopted on 27 June 2023 by ECRI at its 92nd plenary meeting (27-30 June 2023), para. 45 참조.

https://search.coe.int/cm/Pages/result_details.aspx?ObjectId=0900001680_ac3ba4 (last visited on Feb. 13th, 2024)

중심의 지역 간 정부 협력 기구인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산하 ODIHR²⁴⁾에서 실시하는 역내 증오범죄 모니터링에 따르면, 폴란드의 정기적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간행하는 사실, 공공 부문, 특히, 폴란드 검찰, 경찰이 증오범죄 관련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수집하고 있는 사실에 일차적으로 주목한다.²⁵⁾ 이러한 맥락에서 폴란드 검찰, 경찰에 고도로 특화된 증오범죄 전문 조직이 존재하는데, 검찰 내부에 이를 전문으로 하는 100명 이상의 검사가 배치되어 있음과 더불어 경찰 내부에도 2014년에 증오범죄 코디네이터의 조직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도 ODIHR은 주목하고 있다.²⁶⁾

또, 폴란드는 ODIHR의 법 집행에 관한 증오범죄 대응 훈련 프로그램²⁷⁾을 2012년 이래 이수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폴란드 내무부, ODIHR, 그리고 EU 기본권기구(EU Fundamental Rights Agency)가 공동하여 ODIHR가 구축한 프로그램²⁸⁾에 입각한 증오범죄 기록 및 데이터 수집의 이해와 증진을 위하여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는 등,²⁹⁾ 대외적으로는 EU나 지역 간 협력기구와의 소통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덧붙여, 폴란드는 ODIHR의 ‘증오범죄에 대한 포괄적 형사 정의 응답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희생자 조사를 위한 방식 개발에도 협조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폴란드 인권위원이 국내의 특정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증오범죄 중 미보고(암수) 비율의 특징과 규모에 대한 보고서 발행을 위하여 협력한 바 있었다.³⁰⁾

하지만, 폴란드의 위와 같은 노력, 특히 증오범죄를 검토, 대처하기 위한 법집행 능력을 향상하려는 시도를 평가하면서도 ODIHR은 폴란드의 기록 및 통계가 통상의 범죄와 구별되는 특질을 지니는 증오범죄의 독자성을 나타내기에는 불충분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향후 폴란드는 이러한 부류의 범죄에 대한 주의 환기

24) ODIHR: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https://www.osce.org/odih/> (last visited on Feb. 13th, 2024)

25) ODHIR Hate Crime Reporting - Poland, Overview 부분.
<https://hatecrime.osce.org/poland> (last visited on Feb. 13th, 2024)

26) Ibid. 참고로 ODHIR는 이 부분에서 증오범죄 조항을 포함하여 폴란드 형법의 개정안 전반에 대해서도 입법적 review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27) Training Against Hate Crime for Law Enforcement (TAHCLE)

28) Information Against Hate Crimes Toolkit (INFAHCT)

29) *Supra* note 25) 참조.

30) Ibid.

및 검찰의 증오범죄 대처 능력 구축을 통하여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³¹⁾ 이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증오범죄의 억제 관련 국내 실행의 지향은 관련된 반사회적 표출 행위가 0으로 수렴하는 식의 계량화된 목표의 달성도 좋지 만, 궁극적으로는 범죄 자체의 특징이나 경향에 기인하는 요인의 파악과 더불어 억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2) 주요 사례

폴란드의 경우, 자국의 형법 내에서 증오범죄에 대하여 불법화하여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면서도 정작 형법이 지향하고 보호하려는 보편적인 가치와 지향을 달리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특히, 동국 형법 제196조³²⁾는 소위 ‘공중이 배례하는 종교의식에 제공되는 숭배 대상 및 장소를 공연히 도발함으로써 타인의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외부에서 보면 일견 이는 종교적 증오 발언이나 그에 기인하는 범죄를 저지하는 함의를 가진다는 수준에서 그 이상의 의미가 간과되기 쉽다.

그런데, EU의 전신이 태동하였던 독일, 프랑스, 그리고 베네룩스 3국 등과 비교할 때, 폴란드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지배적 종교, 가톨릭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점이 환기되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역내에서 정교분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세속주의(secularism)와 가장 거리가 먼 국가 중 하나인 폴란드의 종교 지형은 내심의 수용이 아닌 실제적 세례 여부로 엄격하게 기준을 잡더라도 2021년 현재 폴란드 국민의 85%가 가톨릭 신자라 한다.³³⁾ 이를 볼 때, 위의 형법 제196조는 동국의 종교적 다수파에 대립하는 소수자의 목소리, 시선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전용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힘들며, 이러한 법 적용은 상당 규모의 복수의 종교가 무난하게 공존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와

31) Ibid. ODIHR's Key Observations 부분,

32) **Article 196.** Whoever offends the religious feelings of other persons by outraging in public an object of religious worship or a place dedicated to the public celebration of religious rites, shall be subject to a fine, the penalty of restriction of liberty or the penalty of deprivation of liberty for up to 2 years.

33)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Eurydice 카테고리 Poland 참조.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poland/population-demographic-situation-languages-and-religions> (last visited on Feb. 13th, 2024)

비교하더라도 그 함의는 완전히 달라진다. 또, 그에 기인하는 폐단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와의 명시적, 묵시적 공조가 존재한다면, 사회적으로 불관용 및 배외주의의 심각화 결과를 불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2023년 10월 폴란드 총선거에서 패배하여 수상을 필두로 하는 정권은 상실하였으나, 여전히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현직 대통령의 원래 소속당이자 공고한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법과 정의당(Prawo i Sprawiedliwość; 이하, PiS)’은 집권 당시 배외주의 및 국수주의적인 정치적 입장을 숨기지 않으면서, EU 및 세계의 우려를 초래하였다. 특히, PiS는 2018년 당시 폴란드와 폴란드인은 전적으로 지난날의 전쟁 및 과거사의 피해자일 뿐이며, 홀로코스트(Holocaust)와 관련하여 개인으로서의 가해자의 인정, 존재 여지도 봉쇄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발언을 공연히 하는 자에게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³⁴⁾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당시 나치 점령 하의 유대계 폴란드 시민들이 받은 인적,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폴란드인들의 간여를 부인함은 물론 폴란드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정부 차원에서 부인하려는 것이었다.³⁵⁾ 일견, 이는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부당한 규제 문제로 증오 발언 사안과는 다른 층위에서도 인식, 비판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법안에 찬성한 폴란드 의회(Sejm)의 입법자들은 기본적으로 종교 지상주의, 배외주의에 친화적일 개연성이 높은바, 증오 발언 및 과생 범죄대처에 미온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PiS를 창립 후 이끌어온 오랜 실세이자 전직 수상이기도 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ław Kaczyński) 당수³⁶⁾의 경우, 2015년 10월 선거를 앞둔 정치 집회에서 국가의 초고위 지도층임에 어울리지 않는 법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발언을 하였는데, “이민자들로 인하여 콜레라나 이질 등 유럽 대륙에서 오래전에 근

34)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of 2018

35) 개정안 중의 문제의 조항은 제55조 a의 1이며, 본 개정안의 영역된 조문과 관련하여서는 The Times of Israel, 2018년 2월 1일 자 인터넷 기사 - Tol Staff, “Full text of Poland’s controversial Holocaust legislation”
<https://www.timesofisrael.com/full-text-of-polands-controversial-holocaust-legislation/>
(last visited on Feb. 13th, 2024)

36) 한국경제 2015년 10월 27일 자 인터넷 기사 - 이상은 기자, “ ‘폴란드의 왕’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5102751321> (last visited on Feb. 13th, 2024)

절되었던 병원체는 물론, 기생충이나 원충을 지닌 채로 이들이 유럽에 유입된다”³⁷⁾는 식의 인종차별적 망언을 숨김없이 사용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빈축을 샀다. 물론, 유력 정치인의 증오 발언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증오를 선동하는 이들 세력의 떠받치는 간과할 수 없는 비율의 지지층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당시 제1야당 당수이던 카친스키는 증오 발언으로 인한 물의를 초래하면서도 오히려 동년 11월의 선거에 승리하여, 정치적 후계자들을 내세운 집권에 성공하는 등³⁸⁾, 2023년 10월의 총선 패배 이전까지 건재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폴란드 민주화 과정에 기여하였던 그의 과거 모습과는 부합되지 않는 면모이기도 하였다.

물론, 총선 이전의 정치적 반대자들로부터 제기된 지적을 보면, 다년에 걸친 그의 권력 남용, 헌정질서 위협 등이 향후 사법상 중첩적으로 심사 대상이 될 경우, 형사적 제재 여지는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³⁹⁾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 발언 자체도 그러한 기회에 논의될지, 또는 사회적인 자성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법적 쟁점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⁴⁰⁾ 하지만, 배외주의적 반이민 분위기에 편승한 PiS 지도자의 무분별한 증오 발언은 폴란드에 있어 부정적 징후의 반영이다.⁴¹⁾ 특히, 폴란드는 당해 정당이 집권하는 동안 EU로부터의 우려 제기에 반발하면서 엉뚱하게도 영국의 Brexit와 같은 선례의 답습도 불사할 것이라는

37)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 *supra* note 23)의 보고서, para. 50; Politico 2015년 10월 14일 자 인터넷 기사 - Jan Cienski, “Migrants carry ‘parasites and protozoa,’ warns Polish opposition leader” <https://www.politico.eu/article/migrants-asylum-poland-kaczynski-election/> (last visited on Feb. 13th, 2024)

38) *Supra* note 36) 참조. PiS는 2015년 8월에는 앞서 언급하였던 안제이 두다를 후보로 옹립, 대통령에 당선시켰으며, 10월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베아타 시드워(Beata Szydło) 수상의 내각을 출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39) 예를 들어 Financial Times 2023년 8월 31일 자 인터넷 기사 - Raphael Minder, “Jarosław Kaczyński should go to jail, says Poland’s ex-president Lech Wałęsa,” <https://www.ft.com/content/28370c29-359b-4058-9116-be1e82695411> (last visited on Feb. 13th, 2024)

40)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 *supra* note 23)의 보고서, para. 50에서는 카친스키의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 발언에 더하여 2019년 선거 당시에 유력 정치인에 의한 LGBT 공동체에 대한 증오 발언이 있었음을 환기하는데, 폴란드 형법상의 혐결로 인하여 형사 범죄의 성립이 실제로 인정되기까지는 쉽지 아니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41) 예를 들어 *Ibid.*, para. 8에서는 2020년 교사나 학생에 의한 이민자 출신 학생에 대한 증오 발언이 폴란드에 존재하였음을 환기하고 있다.

‘Polexit 담론’까지 불거져서 사회적, 지역적 불안이 야기되기도 하는 등, 초래한 파장이 적지 않았다는 점만 고려⁴²⁾하더라도 배외주의적 증오 담론은 일회성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형사적 구성요건을 충시킨다고 해석되는 경우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증오에 기인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검찰 및 경찰의 조사 및 기소를 통하여 사법부에 의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향상을 위한 필수적 훈련이 요망된다는 지적, 증오에 기인하는 범죄 피해자 구제 기금을 통한 배상 노력은 주목할 부분이다.⁴³⁾

2. 체코 및 슬로바키아⁴⁴⁾

(1) 법제 및 역내 검토

우선, 체코 공화국에서는 자국 내에서의 증오 발언 및 그에 기인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증오 발언 등과 관련하여 3차원적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기 쉬운 부분까지도 주목하고 흠결이 존재할 경우, 헌법 및 헌법적 사항을 정점으로 하는 국내적 규범으로부터 출발하여 구축하려는 연구가 존재한다.⁴⁵⁾ 다만, 폴란드 헌

42) Visegrad Insight 2021년 10월 15일 자 인터넷 기사 - Wojciech Przybylski, “It’s a long way to ‘Polexit’”

<https://visegradinsight.eu/its-a-long-way-to-polexit/> (last visited on Feb. 13th, 2024)

43)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 *supra* note 23)의 보고서, paras. 67, 68.

44) 체코 및 슬로바키아 양국과 관련하여서는 부분에서 동시에 논하지만, 1993년 1월 1일을 기하여 구 체코슬로바키아는 분리되었다.

45) 그 예로 Alexandra Dubová et al. “Combating Online Hate Speech in the Czech Republic - Legal analysis and litigation strategies”, Forum for Human Rights, Report (February 2022), p.4에서는 체코의 ‘기본권 및 자유 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constitutional act No. 2/1993 Coll.)]이 체코 헌법 질서임을 명시하면서, 특히 증오 발언과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항목을 열거하는데, 다음과 같다: 차별금지(Article 3(1)), 인간 존엄, 사적 명예, 양호한 명성에 대한 권리(Article 10(1)), 사생활 및 가정생활 보호(Article 10(2)), 개인정보보호(Article 10(3)), 그리고 표현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권리(Article 17) 등을 열거하고 있다.

https://forumhr.eu/wp-content/uploads/2023/01/HATE-SPEECH_report-CR.pdf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법과는 달리 체코 헌법 본문에는 인종적, 민족적 이유에 입각한 증오 선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⁴⁶⁾ 이는 하위 법률, 나아가 구체적 맥락 속에서의 실행 및 framework에 일임된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현행 체코 형법 기준으로는 혐의의 증오 발언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두는 독자적 죄책은 없으며, 오히려, 산재하여 분포하는 여러 조항이 증오 발언의 구성 요소를 포섭 가능한지가 관건인데, 형법 제356조의 구성요건 중에 일정한 집단에 대한 증오 선동이 존재하는바, 증오 발언에 자체에 관련된 직접적 조항으로 볼 수 있다.⁴⁷⁾ 이는 현행의 체코 형법에 의거 증오범죄(hate crime)의 규율이 가능할지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에 대하여 위 보고서에는 증오범죄에 대한 기소는 세 갈래 접근법(three-track system)을 취한다고 언급하는데, 특정 범죄의 기초 사실에 관련된 법익 침해적 동기(Prejudicial motive), 높은 범죄율로 귀결되는 정황인 계획적 동기(premeditated motive)에 더하여 증오에 입각한 동기(hateful motive)는 체코 형법 속에서 소위 일반적 가중 사유인 정황(체코 형법 제42조)⁴⁸⁾으로 취급되며, 이는 양형 및 선고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⁴⁹⁾ 이러한 증오범죄에 관한 세 갈래 접근법을 통하여, 체코 형법은 인종, 종족, 국적, 종교, 정치적 견해, 계급 기타 귀속 등을 이유로 공격받는 이들에 대한 보호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⁵⁰⁾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최소 인터넷 가상 공간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체코의 법적 실행과 관련하여 ODIHR에서는 각료회의 결정 9/09에 따라,

46) 체코 공화국 헌법(영문본)은 다음을 참조.

<https://www.psp.cz/en/docs/laws/1993/1.html> (last visited on Feb. 13th, 2024)

47) *Supra* note 45) pp. 6-7 참조.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도 체코 형법 제356조는 온라인 증오 발언이 문제되었을 경우, 가장 빈번하게 기소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체코 형법 조항 등은 온라인은 물론 인간이 거주하는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담론으로 보이는바, 이를 전제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48) 체코 형법 제42조 b)에서 특히, 행위자가 ‘증오(hatred)’에 입각하여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가중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증오범죄에 관련 형법 조항은 그러한 함의가 결부되기 나름인 관계로 앞서 보았던, ODIHR 보고서에서도 잠재적 적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을 열거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에 관하여 ODIHR Hate Crime Reporting - Hate crime legislation in the Czech Republic 페이지 참조.

<https://hatecrime.osce.org/hate-crime-legislation-czech-republic>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49) *Supra* note 45) pp. 6-7 참조.

50) *Ibid.*

OSCE 참가국은 증오범죄에 대한 공통의 정의에 합의하였으며, 증오범죄에 대한 신뢰 가능한 데이터 및 통계 수집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환기하면서, 증오범죄는 기록 및 정보수집 프로세스를 통틀어 증오의 선동 기타 증오 발언 등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⁵¹⁾ 아울러, OSCE 참여국은 증오범죄를 다루는 법 집행, 기소, 그리고 사법 관리들의 직업훈련 및 역량 강화 활동을 도입, 개발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ODIHR은 체코 공화국이 관련 약속을 이행하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증오범죄 기록 및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포괄적인 자원 제공 및 맞춤형 원조 제공은 물론,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적 자원 제공 및 맞춤형 원조도 제공할 예정임을 천명한다.⁵²⁾ 하지만, 체코 공화국 내 실행의 개선 가능성이나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로마, 이슬람교도, 또는 독일계 등의 소수집단에 대한 증오 발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조장하는 정치인도 존재하는 점과 관련하여,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의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 자문위원회(FCNM)⁵³⁾는 우려를 표한 바 있었다.⁵⁴⁾

한편, 슬로바키아가 구축한 범질서로 논의의 대상을 옮기기로 한다. 슬로바키아 헌법은 앞서 본 체코 헌법과 마찬가지로 인종적, 민족적 이유에 기인하는 증오 선동 등을 경계하고 금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⁵⁵⁾ 따라서, 관련 조항은 슬로바키아 형법에 나타나는데, 우선, 특별한 동기를 정의하는 동 형법 제 140조 e)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하여 어떤 인종, 민족, 국적, 종족 집단에

51) ODIHR Hate Crime Reporting - Czech Republic, Key Observations 부분
<https://hatecrime.osce.org/czech-republic>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52) Ibid.

53) Advisory Committee on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54) Council of Europe, 2021년 6월 10일 자 [press release] “Czech Republic should intensify efforts to combat stereotypes and hate speech against national minorities[Ref. DC 176(2021)]”; Comité consultatif de la Convention-cadre pour la Protection des Minorités Nationales (ACFC), CINQUIÈME AVIS SUR LA RÉPUBLIQUE TCHÈQUE(Adopté le 31 mai 2021), paras. 93, 94, 96 참조.

https://search.coe.int/directorate_of_communications/Pages/result_details.aspx?ObjectId=0900001680a40f13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https://rm.coe.int/5th-op-czech-republic-fr/1680a3d645>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55) 슬로바키아 헌법(영문본)은 다음을 참조.

<https://www.prezident.sk/upload-files/46422.pdf>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실제로 속하거나 속한다고 인식되거나, 또는 사실상 또는 그렇다고 인식되는 출신,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를 이유로 증오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⁵⁶⁾ 그 외에 슬로바키아 형법 제424조 3항의 a)는 ‘민족, 인종, 및 종족적 증오 선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바로 앞의 형법 제423조에서는 일련의 사유로 공연히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자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예정하고 있는바,⁵⁷⁾ 증오의 표출 자체가 물리적 폭력 못지않은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양자의 배치한 본 조문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증오 발언 및 과생 범죄에 관한 슬로바키아가 천명하는 대처 및 실행은 역내에서 보면 앞서 보았던 폴란드나 체코 수준의 성취를 예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⁵⁸⁾ 하지만 유럽 의회에서는 슬로바키아의 권력의 입맛에 부합하는 형법 개정 시도와 관련하여 동국 내에서 기본적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며,⁵⁹⁾ 이 시기 유럽 의회는 EU법 차원에서도 증오 발언 및 증오범죄를 범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⁶⁰⁾ 이는 슬로바키아에서도 유랑민족으로 알려진 로마인(the Romani) 등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종주의, 법적 구제장치의 미비, 그리고 인종을 이유로 하는 증오 발언이 여전히 존재함을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CERD)⁶¹⁾가 중심이 되어 지적하였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⁶²⁾

56) ODIHR Hate Crime Reporting - Hate crime legislations in Slovakia 페이지 참조.

<https://hatecrime.osce.org/hate-crime-legislation-slovakia>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57) Ibid.

58) ODIHR Hate Crime Reporting - National frameworks to address hate crime in Slovakia 페이지 참조.

<https://hatecrime.osce.org/national-frameworks-slovakia>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59) European Parliament, 2024년 1월 15~18일 자 Briefing (Strasbourg Plenary Session), “Concerns about the rule of law in Slovakia,”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agenda/briefing/2024-01-15/15/concerns-about-the-rule-of-law-in-slovakia>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60) European Parliament, 2024년 1월 15~18일 자 Briefing (Strasbourg Plenary Session), “Hate speech and hate crime must become crimes under EU law,”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agenda/briefing/2024-01-15/11/hate-speech-and-hate-crime-must-become-crimes-under-eu-law> (last visited in Feb. 14th, 2024)

61)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62) European Roma Rights Centre, 2022년 9월 9일 자 기고 - Bernard Rorke, “Slovakia: UN Slams Prevalence of anti-Roma Racism, lack of Access to Justice, and Persistence of

(2) 주요 사례

중요 발언과 관련한 체코 공화국의 대표적 고위 인사로는 당 대표, 수상을 역임한 후에 2023년 3월까지의 동국 대통령으로 10년간 자리를 지켰던 밀로시 제만(Miloš Zeman)을 들 수 있다. 그는 재직 당시, 유럽 대륙으로의 중동, 아프리카 출신 난민을 두고 EU 구성국 국가원수로서의 신분임에도 난민 수용에 대단히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이들 유입되는 난민에 대해서는 물론, 그들의 종교적 배경인 이슬람에 대하여 왜곡, 적대시하는 연설, 언급을 지속함으로써 중요 발언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파문을 초래한 바 있다.⁶³⁾ 연설 속에서 이슬람 난민들을 국가적 위협 요소로 단언하면서, 제만은 자신의 배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 변경지대에 상당수 거주하였던 독일계 주민 추방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일정 시기에 모범적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되었던 독일계 주민이 나치 창궐 이후 열성적 히틀러 지지자로 변해갔던 점을 들어 이민자들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논리였다.⁶⁴⁾ 그의 공격적 발언은 EU 역내에서 빈축을 사기 충분하였으나, 근원적인 문제는 그의 여과 없는 발언이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선동당하거나 내심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지지하는 상당수 지지층이 체코 공화국 내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⁶⁵⁾

한편, 슬로바키아는 앞의 언급처럼 동국 내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확립 여부

Racist Hate Speech,”

<http://www.errc.org/news/slovakia-un-slams-prevalence-of-anti-roma-racism-lack-of-access-to-justice-and-persistence-of-racist-hate-speech>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63) 예를 들어 The Guardian 2016년 9월 14일 자 인터넷 기사 - Robert Tait, “Miloš Zeman: the hardline Czech leader fanning hostility to refugee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sep/14/milos-zeman-czech-leader-refugees>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64) Ibid. 다만, 제만 전 대통령의 체코 내 독일계 추방 발언에 대한 비판에도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는 독일 측에서 제기될 비판인데, 비록 제만의 발언이 중요 발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점을 이유로 하여 곧 전전의 나치 독일에 부화뇌동, 협력한 체코 내 독일계 주민들의 역사적 과오 자체는 희석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65) The Conversation 2015년 12월 9일 자 인터넷 기사 - Jan Culik, “Meet Miloš Zeman - the Czech Republic’s answer to Donald Trump,”

<https://theconversation.com/meet-milos-zeman-the-czech-republics-answer-to-donald-trump-52036>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정치적 불안 요소, 즉, 증오 발언 및 그에 기인하는 파생 범죄의 발생 및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다. 1993년 체코 및 슬로바키아 분리 이후 2번의 슬로바키아 수상을 역임하는 정객이었으며, 2023년 10월 세 번째로 수상 자리에 복귀한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의 경우, 이전 임기 당시 체코의 제만 못지않게 반난민, 반이슬람 정서를 표출하였는데, 슬로바키아 국내에는 이들 이슬람 난민을 위한 공간은 없다는 식의 발언을 지속한 바 있다.⁶⁶⁾ 일견, EU 내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던 이슬람 난민 반대 정서를 환기, 언급한 것이지만, 국가의 행정 수반이 국수주의적 경향성, 배외주의적 적대 의식을 여과도 없이 표출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이민자들에 대하여 밀도 끝도 없이 테러의 잠재적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내심의 표출, 즉, 증오 발언으로 나아간 것은 경계할 대목이다.⁶⁷⁾ 그리고 이러한 위협 요소를 안고 있는 정치인을 변함없이 수상으로 선출한 국가의 정치적 토양 역시 배외주의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시사점

종래 개인적, 사회적 발언은 주로 국내법의 간여 사안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타자 및 타 집단과의 조우, 갈등의 확산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외부를 향한 열린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위험에는 사안별로 대처하려는 입장과 이에 대응하여, 외부로부터의 인적, 물적 유입 자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회의주의(skepticism)를 전제하는 입장이 상호 대립하게 된다. 증오 발언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회의주의, 불신에 기인하는 정서가 당해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으로 해

66) Supra note 63)의 기사; Politico 2016년 5월 26일 자 인터넷 기사 - Vince Chadwick, "Robert Fico: Islam has no place in Slovakia,"

<https://www.politico.eu/article/robert-fico-islam-no-place-news-slovakia-muslim-refugee/>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67) DW 2016년 7월 30일 자 인터넷 기사, "Slovakia PM blames migrants for terror threat,"

<https://www.dw.com/en/slovak-prime-minister-blames-migrants-for-terror-threat/a-19438149> (last visited on Feb. 14th, 2024)

소될 수 없거나, 그럴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할 경우, 그에 대한 반발 정서를 기반으로 표출된다.

본 연구에서 증오 발언 등에 대처하는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실행 및 선례를 정리하면서, 이들이 소속된 EU 전체를 아우르는 체제까지는 예정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통상 EU의 각종 실행, 시스템에 대한 담론이 제기될 경우, 인식의 틀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역내 질서를 주도하는 서유럽 권 주요 국가, 그리고 EU의 전신이던 각종 지역 공동체 구축에 주도적으로 간여한 베네룩스 3국의 실행으로 경도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증오범죄 문제도 서유럽 주요 국가는 식민 지배라는 과거의 부정적 유산 가운데서도, 다양한 인종, 민족에 대하여 장기간 대처하였던 경험 및 옛 종주국이던 경험을 가지는지라, 해법의 모색도 그에 고유한 것일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서유럽과는 달리 영토적 변천 및 인구 분포의 복잡성, 영광스러웠던 역사적 과거에 대한 자부심, 향수를 가진 채 지난 세기에는 구소련 공산체제 속에서 외세의 간섭을 받았던 동유럽(비세그라드 그룹의 자체 인식으로는 중부 유럽)은 배외주의적 경향성의 기원, 흐름, 형태가 서유럽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현재 이미 다문화 사회가 구축된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유용한 참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지역적 대처 사례로서 소개, 분석할 필요를 느꼈던바,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폴란드의 경우, 자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불가양적인 본질이자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식한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폴란드의 입장 및 그 배경은 주변 강국에 의하여 유사한 역사적 침략 및 그에 따른 시련을 겪어 왔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단 이해 가능한 부분이나 외연은 상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폴란드의 강고한 민족주의적 정서 및 그 표출이 EU 내 중견 국가로까지 성장한 현시점에 오히려 역내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적 회원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와 표리관계로서 난민, 타자에 대한 배외주의가 발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외주의의 팽배는 체코 및 슬로바키아, 즉, 옛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서도 유사한 갈등 요소로 번지기도 한다. 체코 및 슬로바키아 상당 부분은 역사적으로 상당수 독일인, 헝가리인의 거주 공간이기도 하였는데, 나치즘 등에 대한 부역을 이유로 이들 집단이 전후 추방된 이후에도 수정주의적 역사인식, 영토적

향수를 내포한 독일, 헝가리 측의 불만 표시, 비난 등이 역으로 체코 및 슬로바키아의 배외주의, 우경화를 자극하는 측면도 존재하며, 이는 밀로시 제만 전 체코 대통령이나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 증오 발언과 같은 극단적 반발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수 및 행정 수반, 또는 그에 준하는 비중을 가진 인사들이 지니는 발언이 배외주의적 증오를 내포할 경우의 심각성은 단순한 민형사상 책 그 이상의 실체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구 공산체제에서 탈피, 서구화, 경제 발전에 지난 30여 년간 여념이 없었던 이들 국가들로서는 EU 가입 이후, 브뤼셀 및 스트라스부르로부터 이행 및 준수를 요구받는 제반 사항, 즉, EU법적 요건, 실행, 선례 등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부담 및 반발이 사회적으로 배외주의 및 증오 발언의 주요 기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권역에서 야기되는 증오 발언 및 파생 범죄에 대한 EU 중심부로부터의 시각, 현지에서의 실상, 향후 취해질 필요가 있는 조치란 무엇인가? 이는 EU 차원이라는 거대 담론이 아닌, 지역 밀착형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증오발언 관련 국내 입법의 존재, 하지만 당해 국가를 선도하는 지도자들의 문제적 발언이 공존하는 현상은 이를 그대로 정리하고서 해법 모색에 참조하여야 한다.

V. 결 론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국가, 사회 각 부문에서 보온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외세, 타자에 대한 배외주의 및 증오 발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가? 또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서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만일에 배외주의의 연장에서의 증오 발언 문제가 우리와 관계가 없으며, 생소한 동유럽 지역의 문제로부터 무엇을 도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주의로만 경도된다면 대한민국 자체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기회를 잃게 된다.

증오 발언 및 그에 기인하는 범죄의 대처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제법 및 EU 권역 차원의 framework 확보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각국의 국내 입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 목적적 해석을 확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즉, 가용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개별 국가들의 기존 입법 및 제도를 통하여 대처할 수도 있다. 이렇듯 타자, 타 집단에 대한 1차적, 원시적 호불호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닌, 이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공적 차원에서 이를 억제하고 건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지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지 문제와 연계된다. 타자에 대한 강력한 배타적 대응, 적대감, 때로는 우리의 피해자성에 대한 천착은 폴란드, 체코 등의 선례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여지가 없는가? 이들 지역을 위시하여 세계 각국의 대처 사례를 건설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배외주의의 대처와 점진적 극복이 가능하다면, 그 점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웅기, “헤이트스피치의 피해자로서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고찰 - 뉴커머의 반응과 전략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Impacts of Hate Speech on New Comer Zainichi Koreans,” 일본학(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발행), 제43권 (2016)
- 노운선, “한·일 수교 50주년, 혐한(嫌韓)에 대한 재인식 = 50 years of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 a New Understanding of Anti-Korean Sentiment,” 일본문화연구 제59권 (2016)
- 류지성, “최근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관한 연구,” 법제 2016년 제3권, 2016
- 배상균, “일본의 혐오표현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A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Hate Speech in Japan - Focusing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hate speech -”,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7
- 정인섭, 조약법 - 이론과 실행, 박영사, 2023
- 井竿富雄 「現代日本の排外主義運動」 『山口縣立大學學術情報』 第8号(2015年 3月). pp. 1-10
- 金明秀 「日本における排外主義の規定要因 - 社會意識論のフレームを用いて -」 『フォーラム現代社會學』 14 (2015)
- 師岡康子 『ヘイト・スピーチとは何か』 岩波新書 1460(2013), pp. 43-45
- Akuzawa, Mariko, “Changing Patterns of Discrimination in Japan: Rise of Hate Speech and Exclusivism on the Internet, and the Challenges to Human Rights Education,” 台灣人權學刊 第三卷第四期 (2016)
- Ambrosio, Thomas, Irredentism: Ethnic Conflict and International Politics, Praeger Pub, 2001
- Apponyi, Count Albert et al. Justice for Hungary: Review and Criticism of the Effect of the Treaty of Trianon, Simon Publications (2002)
- Balogh, Lídia, “Racist and Related Hate Crimes in Hungary - Recent Empirical Findings,” ACTA JURIDICA HUNGARICA 52, No 4, (2011)

- Higaki, Shinji and Yuji Nasu(eds.) Hate Speech in Japan: The Possibility of a Non-Regulatory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Higashikawa, Koji, “Japan’s Hate Speech Laws: Translations of the Osaka City Ordinance and the National Act to Curb Hate Speech in Japan“,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Vol. 19:1 (2017)
- Horbulák, Zsolt, “The Image of the Treaty of Trianon in Slovak Historiography”, RES HISTORICA 42 (2016)
- Koltay András, “Hate Speech and the Protection of Communities in the Hungarian Legal System” humedialaw.org. (http://hunmedialaw.org/dokumentum/554/hate_speech_regulation_in_Hungary.pdf)
- Koontz, Nichole, “The Potential for National Hate Speech Legislation and Japan: An International Consideration on Possibilities“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ol. 16:2 (2017)
- Kotani, Junko, A Comment on Hate Speech Regulation in Japan after the Enactment Ng, Edmond, “[Editorial] - The Pandemic of Hate is Giving COVID-19 a Helping Hand,” Am. J. Trop. Med. Hyg., 102(6), 2020, pp. 1158 - 1159, of the the Hate Speech Elimination Act of 2016, 法政研究21卷 3 / 4 号 (2017)

2. 판례 기타 자료

- Comité consultatif de la Convention-cadre pour la Protection des Minorités Nationales (ACFC), CINQUIÈME AVIS SUR LA RÉPUBLIQUE TCHÈQUE(Adopté le 31 mai 2021)
<https://rm.coe.int/5th-op-czech-republic-fr/1680a3d645>
- Council of Europe, 2021년 6월 10일 자 [press release] “Czech Republic should intensify efforts to combat stereotypes and hate speech against national minorities[Ref. DC 176(2021)]”
https://search.coe.int/directorate_of_communications/Pages/result_details.aspx?ObjectId=0900001680a40f13
- ECRI Report on Romania (fifth monitoring circle), ECRI Seretariat, June 2019
European Parliament, 2024년 1월 15~18일 자 Briefing (Strasbourg)

Plenary Session), “Concerns about the rule of law in Slovakia,”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agenda/briefing/2024-01-15/15/concerns-about-the-rule-of-law-in-slovakia>

European Parliament, 2024년 1월 15~18일 자 Briefing (Strasbourg Plenary Session), “Hate speech and hate crime must become crimes under EU law,”.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agenda/briefing/2024-01-15/11/hate-speech-and-hate-crime-must-become-crimes-under-eu-law>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 Final report on Poland adopted on 27 June 2023 by ECRI at its 92nd plenary meeting (27-30 June 2023)

https://search.coe.int/cm/Pages/result_details.aspx?ObjectId=0900001680ac3ba4

ODHIR Hate Crime Reporting - Czech Republic

<https://hatecrime.osce.org/czech-republic>

ODIHR Hate Crime Reporting - Hate crime legislation in the Czech Republic

<https://hatecrime.osce.org/hate-crime-legislation-czech-republic>

ODHIR Hate Crime Reporting - Poland

<https://hatecrime.osce.org/poland>

ODIHR Hate Crime Reporting - Hate crime legislations in Slovakia

<https://hatecrime.osce.org/hate-crime-legislation-slovakia>

ODIHR Hate Crime Reporting - National frameworks to address hate crime in Slovakia.

<https://hatecrime.osce.org/national-frameworks-slovakia>

홍사단, “[시민사회 연대 성명문] ‘혐오범죄’에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일본사법부를 규탄한다”, 2020년 9월 14일 자 성명

<http://m.yka.or.kr/alim/statement.asp?no=19625&skey=&sword=>

비셰그라드 그룹 홈페이지 <https://www.visegradgroup.eu/about>

Alexandra Dubová et al. “Combating Online Hate Speech in the Czech Republic - Legal analysis and litigation strategies”, Forum for Human Rights, Report (February 2022)

https://forumhr.eu/wp-content/uploads/2023/01/HATE-SPEECH_report-CR.pdf

European Roma Rights Centre, 2022년 9월 9일 자 기고 - Bernard Rorke, “Slovakia: UN Slams Prevalence of anti-Roma Racism, lack of Access to Justice, and Persistence of Racist Hate Speech,”

<http://www.errc.org/news/slovakia-un-slams-prevalence-of-anti-roma-racism-lack-of-access-to-justice-and-persistence-of-racist-hate-speech>

Judi Atkins, “‘Rivers of Blood’ fifty years on: Enoch Powell’s rhetoric of blame and exclusion,” British Politics and Policy at LSE, 2018년 4월 13일 자 학내 블로그.

<https://blogs.lse.ac.uk/politicsandpolicy/rivers-of-blood-fifty-years-on/>
Pew Research Center 2019년 9월 23일 자 인터넷 기고 - Moira Fagan and Christine

Huang, “United Nations gets mostly positive marks from people around the world”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9/09/23/united-nations-gets-mostly-positive-marks-from-people-around-the-world/>

서울신문 2020년 7월 13일 자 인터넷 기사 - 김태균 특파원, “하루키, 간토 조선인 학살 거론… 日 ‘코로나 배타주의’ 경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13026026>

조선일보 2020년 7월 14일 자 인터넷 기사, “‘코로나 배타주의 - 간토 조선인 학살 연상시켜’ -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 사회 번지는 배타주의 우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0014.html

프레시안 2023년 12월 12일 자 인터넷 기고 - 황준서, “‘사회적 합의’ 부족하다는 차별금지법, 정작 ‘합의’ 안 되는 이유는?” 참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21214431379743>

한국경제 2015년 10월 27일 자 인터넷 기사 - 이상은 기자, “ ‘폴란드의 왕’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5102751321>

- 毎日新聞 2021년 7월 28일 자 인터넷 기사 - 金志尙, “ヘイトは消えたか - 「排外主義」の廣がり 自民党の責任も 解消法施行後もヘイト続く”
<https://mainichi.jp/articles/20210727/k00/00m/040/268000c>
- DW 2016년 7월 30일 자 인터넷 기사, “Slovakia PM blames migrants for terror threat,”
<https://www.dw.com/en/slovak-prime-minister-blames-migrants-for-terror-threat/a-19438149>
- Financial Times 2023년 8월 31일 자 인터넷 기사 - Raphael Minder, “Jarosław Kaczyński should go to jail, says Poland’s ex-president Lech Wałęsa,”
<https://www.ft.com/content/28370c29-359b-4058-9116-be1e82695411>
- Politico 2016년 5월 26일 자 인터넷 기사 - Vince Chadwick, “Robert Fico: Islam has no place in Slovakia,”
<https://www.politico.eu/article/robert-fico-islam-no-place-news-slovakia-muslim-refugee/> 2015년 10월 14일 자 인터넷 기사 - Jan Cienski, “Migrants carry ‘parasites and protozoa,’ warns Polish opposition leader”
<https://www.politico.eu/article/migrants-asylum-poland-kaczynski-election>
- Reuters 2020년 2월 19일 자 기사,
”Slovak far-right leader on trial for hate speech may play election kingmaker“
<https://www.reuters.com/article/us-slovakia-election-farright-idUSKBN20C26U>
- The Conversation 2015년 12월 9일 자 인터넷 기사 - Jan Culik, “Meet Miloš Zeman - the Czech Republic’s answer to Donald Trump,”
<https://theconversation.com/meet-milos-zeman-the-czech-republics-answer-to-donald-trump-52036>
- The Guardian 2023년 11월 9일 자 인터넷 기사 - Daniel Boffey, “Braverman clarifies Northern Ireland comments amid angry criticism,”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3/nov/09/braverman-clarifies-northern-ireland-comments-amid-angry-criticism> 2016년 9월 14일 자 인터넷 기사 - Robert Tait, “Miloš Zeman: the hardline Czech leader fanning hostility to refugee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sep/14/milos-zeman-czech-leader-refugees>

The Times of Israel, 2018년 2월 1일 자 인터넷 기사 - Tol Staff, “Full text of Poland’s controversial Holocaust legislation”

<https://www.timesofisrael.com/full-text-of-polands-controversial-holocaust-legislation/>

Visegrad Insight 2021년 10월 15일 자 인터넷 기사 - Wojciech Przybylski, “It’s a long way to ‘Polexit’”

<https://visegradinsight.eu/its-a-long-way-to-polexit/>

[ABSTRACT]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Eastern European
Practice: Managements of the Chauvinism-based
conflicts***

Hwang, Myoung-Jun**

The study on hate speech this time intends to focus o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ich has been struggling to escape from the influence of the former Soviet Union, even after the countries thereof were incorporated into the expanding EU. However, the chauvinism emerging in the Visegrad area and the hate speech derivative of the tendency indicate that the possibility of regional tolerance as a value has been challenged in the name of sovereignty, border, glory of the past. Behind the positive blueprint of the EU prosperity, the hate speech and its derivative crimes may grow into a social malady to the detriment of the EU integration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of minority groups.

Over decades, chauvinistic tendency be has been proliferated also in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and Austria. Simultaneously, the existence of the remnant revisionist groups that still adheres to the racist views will raise concerns in terms of establishing post-war peace. The first step in challenging the law and order resulting from this tendency can be summarized as hate speech and the crimes derived from it.

Hate speech and its derivative as utterances or illegal acts could be surely sued within the context of ordinary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12067)

** Lecturer at Wonkwang University Law School, Ph.D in Law.

this approach does not fully comprehend the potential danger of hatred-based activity as a symptom that can escalate into an aggravated scale of conflict. The risk of synergistic overlap between historical superiority and nostalgic irredentism, in addition to economic circumstances, has been gradually prevalent in the Eastern Europe, but precedents and analysis thereof are expected to provide a series of useful reference to South Korea, which paradoxically has maintained longstanding issues with its own past and neighbors. Chauvinism, which is the hotbed of hate speech and hate crimes, can not be overlooked as an exceptional and peripheral happening. Rather, it needs to be monitored as a widely inherent risk factor in the human society.

Key Words

Chauvinism, hate speech, hate crime, Eastern Europ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U system